

2022. 12. 9.(금) 10:00

**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1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1,045,441	1,001,000	44,441
일 반 회 계		1,043,500	999,400	44,100
특 별 회 계		1,941	1,600	341
	의료급여기금	1,136	949	187
	기반시설	120	0	120
	치수사업	683	650	33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45,441	1,001,000	44,441	4.44
일반회계	계	1,043,500	999,400	44,100	4.41
	지방세수입	212,133	198,695	13,438	6.76
	세외수입	49,118	44,329	4,789	10.81
	경상적세외수입	24,654	25,889	△1,235	△4.77
	임시적세외수입	15,417	11,108	4,309	38.8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47	7,332	1,715	23.40
	지방교부세	256,766	255,511	1,255	0.49
	조정교부금등	51,299	48,283	3,016	6.25
	보조금	421,383	408,316	13,067	3.20
	국고보조금등	275,755	266,114	9,641	3.62
	사·도비보조금등	145,627	142,202	3,425	2.41
	지방채	1,150	1,15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3,116	8,535	19.80
특별회계	계	1,941	1,600	341	21.31
	세외수입	191	190	1	0.42
	경상적세외수입	3	2	1	37.28
	임시적세외수입	188	188	0	0
	보조금	706	706	0	0
	국고보조금등	565	565	0	0
	사·도비보조금등	141	14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3	703	340	48.38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45,441	1,001,000	44,441	4.44
일반회계	계	1,043,500	999,400	44,100	4.41
	일반공공행정	46,031	48,266	△2,235	△4.63
	공공질서및안전	6,1289	6,135	△7	△0.11
	교육	12,718	13,240	△522	△3.94
	문화및관광	55,383	623,923	△7,540	△11.98
	환경	26,845	27,301	△456	△1.67
	사회복지	386,096	373,534	12,562	3.36
	보건	30,679	29,180	1,499	5.14
	농림해양수산	67,158	67,651	△493	△0.73
	산업·중소기업	3,283	3,299	△16	△0.49
	교통및물류	123,648	123,626	22	0.02
	국토및지역개발	79,226	79,960	△734	△1.25
	예비비	2,346	15,192	△13,164	△84.88
	기타	203,958	148,773	55,185	37.09
특별회계	계	1,941	1,600	341	21.31
	사회복지	598	598	0	0
	국토및지역개발	355	355	0	0
	기타	988	647	341	52.68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45,441	1,001,000	44,441	4.44
일 반 회 계	계	1,043,500	999,400	44,100	4.41
	인건비	90,098	91,165	△1,067	△1.17
	물건비	42,505	44,368	△1,863	△4.20
	경상이전	508,019	497,661	10,358	2.08
	자본지출	289,314	296,605	△7,291	△2.46
	시설비및부대비	265,469	272,901	△7,432	△2.72
	민간자본이전	12,985	12,731	254	1.9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63	4,861	2,434	0.05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46	1,384	△37,502	△2.71
	자산취득비	4,651	4,729	△78	△1.65
	내부거래	100,882	44,882	56,000	124.77
	예비비및기타	12,682	24,719	△12,037	△48.70
	예비비	2,346	15,510	△13,164	△84.88
	반환금기타	10,336	9,209	1,127	12.24
특 별 회 계	계	1,941	1,600	341	21.31
	인건비	392	392	0	0
	물건비	41	41	0	0
	경상이전	590	590	0	0
	자본지출	91	91	0	0
	예비비및기타	486	486	0	0
	예비비	243	243	0	0
	반환금기타	243	243	0	0

4)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 560억 원
-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등 반영 : 28억 원
 -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 7.1억 원
 - 도로굴착복구 : 9억 원
 - 천내천 취수장 시설개선사업 : 5.6억 원
 - 양수장 시설개선(자모양수장) : 0.5억 원 등
-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조정액 : 130억 원
 - 기초연금 지급 : 62.3억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 9억 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7.7억 원
 - 임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15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 14억 원
 - 아동수당지원 : 10억 원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7.6억 원
 - 가정양육지원 사업 : △5억 원 등
-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 11.3억 원
 -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8.2억 원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3.1억 원
- 연도내 집행불가사업 등 세출구조 조정 : △287억 원
 - 논공 금포리 863-1번지 일원 도로정비 : △5억 원
 - 기타 집행불가사업 및 집행잔액 등 조정액 : △282억 원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억원보다 444억원(증 4.44%)이 증가된 1조 454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994억원 보다 441억원이 증액된 1조 43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세입예산은 지방세 134억 3천만원,
세외수입 47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12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 30억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 130억 6천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억 7천만원 등
총44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으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28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60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130억원,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28억원, 국·시비 집
행잔액 반환금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예산 1,667억원 중 1,05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난해 이월액 1,003억 4천만원 대비 52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명시이월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예산액(백만원)	93,883	100,344	105,605	

- 2022년도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하빈 동곡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공사	16억 2천만원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11억 6천만원
옥포 기세리 969-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33억원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22억 3천만원
비슬산 휴양림 도로정비관리	38억 2천만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19억 9천만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31억 3천만원
현풍 경관광장 조성사업	74억 7천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0억 7천만원
달성 테크노 스포츠 센터 건립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향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행정절차의 조속한 처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일반회계 여유재원(5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 증 560억원
- (지출계획)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 증 56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56,000	0	56,000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03,492	147,492	56,000

○ 통합계정 지출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예수금	220,400	0	220,400
지출계획	지출 총계	6,883,102	6,883,102	220,400
	· 통합계정 예치금	6,374,778	6,274,178	100,6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728,724	608,924	119,80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5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계획이 560억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1,474억 9천만원에서 560억원 증액되어 2,03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통합계정은 의료급여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2억 2천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그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1억 2천만원을 상환하여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62억 7천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6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설치비의 지원, 지원신청 등 규정 (안 제4조~제6조)
-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규정 (안제7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수당 등 규정 (안 제8조~제14조)
- 사업자와 협약체결, 지도감독 등 규정 (안 제15조~제19조)

5.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재정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 안 제4조 ~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설치비의 지원, 지원신청 등
- 안 제7조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 안 제8조 ~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수당 등
- 안 제15조 ~ 제19조 사업자와 협약체결,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규정에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바,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사용압력으로 감압 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 및 정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의 지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허가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설치사업에 한한다.

1. 가스분관 설치
2. 정압기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한 경우에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방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임직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와 협약체결) 군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관계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공 사 위 치					배관길이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단독주택용 :		세대	
				기 타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신 청 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 총 공 사 비 : • 사업자 부담 : • 보 조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구간별 투자금액 내역 1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사업의 허가)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⑪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광동환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
- 교육경비의 보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의 제한, 준용규정 (안 제3조 ~ 제6조)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7조~제14조)
-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반환,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조~제20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3조 ~ 제6조 교육경비의 보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의 제한, 준용규정을 정함
- 안 제7조 ~ 제14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15조 ~ 제20조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반환,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급자가 아닌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우선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점차적으로 보조금 사업 확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3. 유아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장으로 하여금 관할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박영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범위 규정(안 제2조, 제3조)
-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군수와 사업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5조)
-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대가 지급을 예고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제8조)
- 계약의 제한, 신고센터 설치, 자료제출 요구,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을 규정(안 제9조~제15조)

5.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
- 안 제4조~제5조 군수와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제9조 대가지급 예고, 직접 지급, 계약의 제한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제15조 신고센터 설치, 자료제출 요구, 계약특수조건 반영 협조관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임금채불을 방지하여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노동자”란 각종 자재·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제4호에 따른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등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말한다),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 노동계약서, 노동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상대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만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노동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인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홍보)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

당 사업장의 임금 등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 등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채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 등 채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채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채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채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

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박영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규정함

5.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규정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로 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환급 또는 사용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을 포함한다)은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발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국토교통부(도시규제정비팀), 02-2110-809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법률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박주용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함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 규정 (안 제4조~제7조)
- 지원내용, 비밀준수 등을 규정 (안 제8조~제9조)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청소년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억울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
- 안 제4조~제7조 지원대상, 범위,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8조~제9조 지원내용, 비밀준수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은 달성군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한 채무로서 상속인인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할법원에서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법률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내에 그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 주 소 :

2. 법률지원 요청내용

○

○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최재규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1조~제3조)
-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지원 대상지, 처리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제6조)
- 실태조사,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 등은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대상지, 지원사업에 대해 정함
- 안 제7조~제10조 실태조사, 지원신청, 지원 결정, 사업시행 등을 규정함

○ 검토의견

-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 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군민이 자체적으로 위험수목 등을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건물명)		(전화:)						
신청 사항	위치		신청인 주소와 같음.						
	위험수목 현황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제거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전지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사유									
대체수목 식재계획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협약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은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인접에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으며, 본 작업으로 인한 본인 재산의 손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시 잘려진 나무 및 가지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완료 후 수목이 제거된 산에서 토사 및 암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이 훼손 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시 상기사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름철 태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 본인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신청하였으며, 작업 시행에 따른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훼손 및 사업 완료 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하여 달성군에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세 대 원 동 의 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 세대원 동의{거주 세대원 3분의 2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세대주	주소	서명(인)	비고 (소유자 여부 등)
1				
2				
3				
4				
5				
6				
7				
8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세대원 주민 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 식재 (예정) 일 :

○ 수종 및 규격 :

○ 수 량 :

본인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원을 대표하여 위험수목으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만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의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위험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택 명)

연락처(H.P)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

신 청 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의 내 견 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2조(대지의 조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절차 등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범위,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5. 관계법령

- 「자연대해대책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태풍·홍수·호우(豪雨)·대설 등으로 발생 하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절차 등을 정함
- 안 제7조~제10조 지원범위,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물막이판)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가 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에 의해 빗물 등이 주택 등에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차단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절차 등)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 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으로 조문 변경함 (안 제4조제1항)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서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조문변경 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 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u>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u> 위탁 운영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관내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제4조)
-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제6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안 제7조~제8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9조)

5. 관계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 안 제5조~제6조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
- 안 제7조~제8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을 규정
- 안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를 위한 발달 지원사업으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자문,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환경시책 장려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안 제명)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자문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
- 폭넓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가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제6호)
-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 신설 (안 제9조)

- 재정지원, 환경시책 장려를 위한 홍보물(기념품) 제공 신설(안 제10조)
- 회의 참석, 자원봉사 등 실비지원 조항 신설 (안 제11조)

5.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군민 스스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편,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1조, 제2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함
「환경교육진흥법」에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
- 안 제5조 협의회 자문 조항을 규정(신설)
- 안 제7조제6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항 규정(신설)
- 안 제8조~제9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신설)
- 안 제10조, 제11조 재정지원, 실비지급 등을 규정함(신설)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중전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

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 2. --- 「환경교육법」-----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 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6. (생략)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 ----- 1.~6.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신 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 -----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u>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u>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u>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u>제7조(재정지원)</u>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제10조(재정지원)</u>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② 군수는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1. 1. 5., 전부개정,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3. 3. 1.] 제10조의2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이연숙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4조~제7조)
- 피해지원금 수령, 처리비용 환수 규정(안 제8조~제9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 안 제8조~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처리비용 환수 등에 관한 규정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명피해		[] 사망·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①	②	③	④
	피해면적	①	②	③	④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	------	--	------	--

☐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뒤쪽)

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 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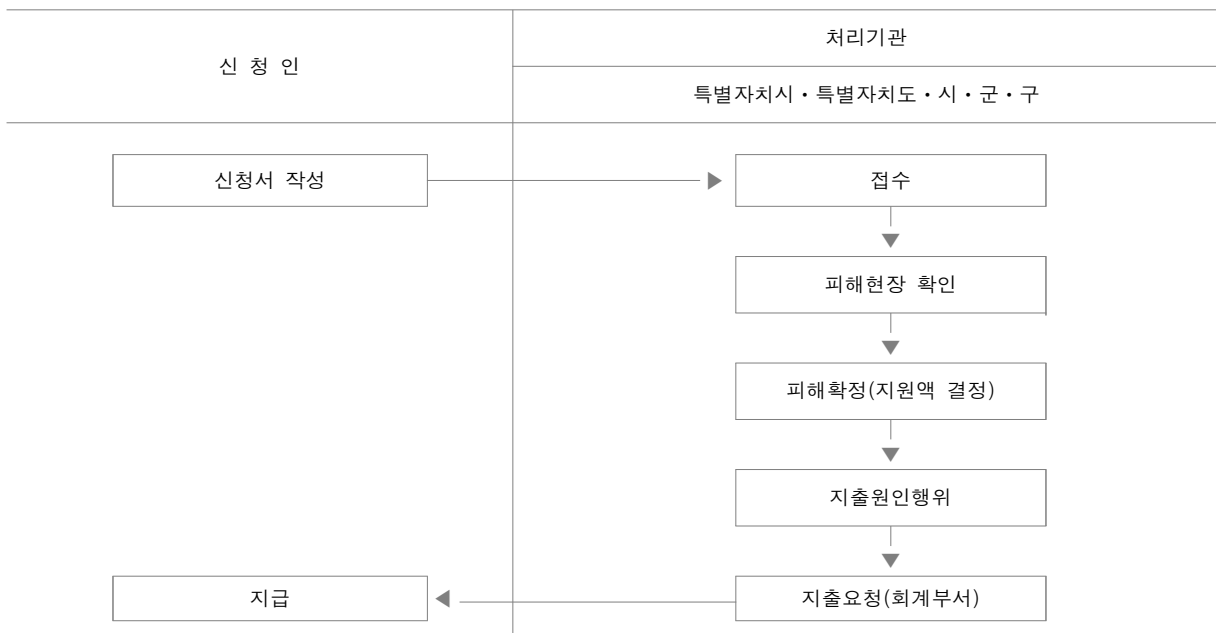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 및 읍·면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24일

2. 제 출 자 : 이연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 의회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23년	월 2,015,44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 의회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기준표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23년	월 2,015,44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 참 고

구 분	지 급 액
2019년	월 1,882,37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월 1,916,250원)
2021년	(월 1,969,900원)
2022년	(월 1,987,620원)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2023년	월 2,015,44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5조)
-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6조~제8조)
- 근무여건개선,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결정 등(안 제9조~제13조)

5.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4조~제5조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안 제6조~제8조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규정
- 안 제9조~제13조 근무여건개선,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결정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민원인의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의 발생은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비대면으로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원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4.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 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제2호 각 목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6.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제2호 각 목의 위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역할을 부여 받은 부서 내 직원별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 등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악성민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등의 배치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①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총괄하는 전담대응팀 구성
5.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전보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 ·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3.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 유리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4. 민원인의 폭행 · 폭언 등 위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를 위한 휴대용 영상 · 음성기록장비의 확보
5. 청원경찰 ·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등)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 ·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여건개선)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의 정례화 또는 상설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전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공무원 등을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 연수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0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공무원 등의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행위를 한 경위 및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및 제12조 관련)

피해 발생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 성 별: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 료 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table> <tr> <td>은행명</td> <td>(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 <td>계좌번호</td> <td>(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 </tr> </table>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증빙 자료 (3개월 이내 발행)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지원 기준 (제7조 및 제10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 리 상 담	제 1 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달성군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의 료 비	제 2 호	최대 100만원	1.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 식 시 간 · 공 간	제 3 호	4시간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 시간 연장 가능 *휴식시 간은 공가처리
법 률 상 담 , 형사고발 또는 손 해배상 소송 등	제 4 호	예산범위 내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 상담서비스’ 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 를 위한 교육 및 연 수	제 5 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 가	제 6 호	5일 이내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장비	제 7 호	예산의 범위 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 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민원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성서5차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세천1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과다·과밀 행정리를 구성하고 있어 행정리 분리·신설 추진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 도모하고자 함(주민 건의사항)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리 증(326리 ⇨ 328리), 8반 증(2,814반 ⇨ 2,822반)

읍·면	기존		세대수 (인구수)	개정		세대수 (인구수)	증감		이장 정수	비 고
	행정리	반		행정 리	반		리	반		
다 사 읍	계	10	1,172 (1,714)		18	1,172 (1,714)	2	8	3	
	세 천1리	10	1,172 (1,714)	세 천 1 리	10	298 (551)	-	-	1	
	-	-	-	세 천 8 리	5	523 (706)	1	5	1	
	-	-	-	세 천 9 리	3	351 (457)	1	3	1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성서5차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세천1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행정리 분리·신설 추진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민건의사항)

○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리 중(326리 ⇨ 328리), 8반 중(2,814반 ⇨ 2,822반)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세대수	읍면	리	반	세대수
다사읍	세천1리	10	1,172 (1,714)	다사읍	세천1리	10	298 (551)
	-	-	-		세천8리	5	523 (706)
	-	-	-		세천9리	3	351 (457)

○ 검토결과

-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한 행정리 분리·신설 추진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다사읍 세천리란 및 다사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8리
			세천9리
다사읍 소계	11	65	65

별표3 중 다사읍 세천1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1리	제 1 반	125~135(131 제외), 952~954, 955-2, 978, 980
		2	135-3, 943~946, 948-1, 949~951
		3	969~972, 955~967, 977-6, 979-1, 979-2
		4	876~891(878 제외), 916-1, 917~933(920, 924, 926, 927 제외), 934-2, 935~938, 940, 941-2 947, 1529-9
		5	892~898(897 제외), 911~912, 914-2
		6	843~847, 899~903, 904-1, 905-1, 906~909
		7	833, 834-1, 835, 836~842(839,840 제외) 848~865(857,862 제외), 866-3
		8	1026~1032
		9	973~976, 913~916(915 제외), 1033~1046
		10	740~745, 1014, 1022~1023, 1047~1082 (1073, 1075 제외), 1083-1, 1084~1087, 1088-2, 1168~1172(1169 제외), 1542-4, 1544-4, 1582~1585, 1668, 1672~1684(1675 제외)

별표3 중 다사읍 세천7리란 다음에 세천8리란 및 세천9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8리	제 1 반	977, 1000, 1002-3, 1003, 1023-3, 1025, 1028-2, 1029-2, 1574~1581
		2	1570~1573
		3	1567~1569
		4	1561~1565
		5	43~45, 152~279 (161,195,199,223,261제외), 685~689, 691~692,

읍 면	리	반	구 역
			868~875, 1662~1671 (1668 제외), 1554~1560
	세천9리	제 1 반	92, 1590~1593(1591 제외), 1697~1702
		2	1591, 1594~1604, 1695~1696
		3	1503, 1685~1693, 1605~16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8리 세천9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63	63	다사읍 소계	11	65	65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1리	제1반	892~910	다사읍	세천1리	제1반	125~135(131 제외), 952~954, 955-2, 978, 980
		2	918~961			2	135-3, 943~946, 948-1, 949~951
		3	876~93			3	969~972, 955~967, 977-6, 979-1, 979-2
		4	632-3~1093			4	876~891(878 제외), 916-1, 917~933(920, 924, 926, 927 제외), 934-2, 935~938, 940, 941-2 947, 1529-9
		5	1035~1045			5	892~898(897 제외), 911~912, 914-2
		6	1027-2~1069			6	843~847, 899~903, 904-1, 905-1, 906~909
		7	1035~1045			7	833, 834-1, 835, 836~842(839,840 제외), 848~865(857,862 제외), 866-3
		8	1~165			8	1026~1032
		9	165~265			9	973~976, 913~916(915 제외), 1033~1046
		10	266~800			10	740~745, 1014, 1022~1023, 1047~1082(1073, 1075 제외), 1083-1, 1084~1087, 1088-2, 1168~1172(1169 제외), 1542-4, 1544-4, 1582~1585, 1668, 1672~1684(1675 제외)

	<신설>			세천8리	제1반	977, 1000, 1002-3, 1003, 1023-3, 1025, 1028-2, 1029-2, 1574~1581
					2	1570~1573
					3	1567~1569
					4	1561~1565
					5	43~45, 152~279(161,195,199,223,261 제외), 685~689, 691~692, 868~875, 1662~1671 (1668 제외), 1554~1560
	<신설>			세천9리	제1반	92, 1590~1593(1591 제외), 1697~1702
					2	1591, 1594~1604, 1695~1696
					3	1503, 1685~1693, 1605~1609

참고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행정리 분리 · 신설 세천1리 · 8리 · 9리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군세 징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매각대금 수령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로 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시행규칙 제52조의3 → 시행규칙 제73조의8

5.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군세 징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4조에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
 - 법 제71조의2 제1항 → 법 제103조의3 제1항
- 안 제10조에 매각대금 수령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로 변경
- 안 제12조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
 - 시행규칙 제52조의3 → 시행규칙 제73조의8

○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일
부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생략) ② ~ ⑤ (생략)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 ----- ----- ----- 1.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u> 」 제76조에 따라 <u>세입세출외현금</u> 으로 군금고에 납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u>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입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
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
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
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

3조의8-----

-----.

1. ~ 4.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제)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8.]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52조의3 [중전 제52조의3은 제73조의8로 이동 <2022. 3. 18.>]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개정(시행 2021. 4. 6.)에 따른 수수료 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별표1】 공유 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삭제

1. 일반행정 관계

- | | | |
|---------------------------|-------|----|
|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 | 삭제 |
| 1) 신규 : 1건, 5,000원 | ----- | 삭제 |
| 2) 갱신또는 기간연장 : 1건, 3,000원 | ----- | 삭제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별표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삭제함
·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의 제증명 등 수수료

○ 검토결과

-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상위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				(1) <삭제>			
1)신규		1건	5,000원	1) <삭제>			
2)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삭제>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부양사실 증명	1통		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1통		1,000원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소요량	1통		1,000원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3.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1,0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000원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0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1,000원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기타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1통	1,000원	
(2)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3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3)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외국인등록표등본		1통	300원	
(6)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본		1필지	1,000원	
			(길라발급의 경우 1,500원)	
·열 람		1필지	400원	
(8) 비주거용 개별(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100원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1건	600원	
2. 산림관계				
(1)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1건	1,0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2,500원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1건	2,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 석유대체연료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2,500원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1,2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2,2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3,2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1,000원		
(6)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1,000원		
(7)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700원		
(8)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9)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10)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11)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 부	1건	2,000원	
(6)	적출물처리업자지정	1건	10,000원	
(7)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9)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1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12)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10,000원	
(13)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종합유원시설업	1건	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50,000원	
(6)	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종합유원시설업	1건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1건	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8)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1건	20,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20)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1) 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2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7)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28)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1건	20,000원	
(29)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원	
(3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원	
(3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1건		4,000원			
7.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		1건		300원			
8.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사항		1건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신고		1건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7)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6,000원			
(8)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9) 기타							
· 영업양수 신고		1건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 료에 준함			
9. 부동산 중개업 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내수면 어업법 및 양식업 관련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공동어업		1건		7,500원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3)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6)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7)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1건		1,000원			
(8) 양식업 변경 허가		1건		1,500원			
(9) 양식업 변경 신고		1건		1,500원			
(10)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11. 화물운송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12.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건		3,000원			
(2)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20,000원			
13.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4. 어선법 관계							
(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또는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				
(1)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2)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3)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1. 4. 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1. 5.>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 '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 4. 20.)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함
-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과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하고 현행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조항(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안 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위임사항 반영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1건당 기준 가격 :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건당 기준 면적 : 취득 시 1천제곱미터 · 처분 시 2천제곱미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함 (안 제20조의2)

- 국제기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사용하려는 민간·사회단체 등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무이자 분할납부안 신설(안 제38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 조항 신설(안 제62조)

○ 상위법령 및 현행 기준에 맞도록 규정 정비

1. 개정법률의 제정 목적과 동일하게 조례의 목적을 정비(안 제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함
 -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변경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선(안 제31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6조, 안 제32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38조)
6.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 정비(안 제35조)
7.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 정비(안 제63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항목 정비(안 제5조)

- 재산의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심의항목으로 추가
- 심의회 생략 가능한 재산 기준가격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
-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29

(2022. 4. 29.)호 및 대구광역시 회계과-8419(2022. 4. 29.)호] 반영

-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 삭제 (안 제50조, 안 제 51조, 안 제52조, 안 제56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 20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0.)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함
-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항목 정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재산의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심의항목으로 추가
 - 심의회 생략 가능한 재산의 기준가격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의 취득·처분으로 조정함
 -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을 삭제함

- **안 제1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 **안 제12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신설
 - 1건당 기준 가격 :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건당 기준 면적 : 취득 시 1천제곱미터 / 처분 시 2천제곱미터
- **안 제2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함
 - 국제기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사용하려는 민간·사회단체 등
- **안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개선
- **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무이자 분할납부 등 (신설)
- **안 제6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신설)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조의2”를 “영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를 “법 제11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득·처분의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
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를 “기준가격 5천만원 이
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를 “재개발사업구역내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법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2조에 따라”를 “제12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익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 내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군 내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중 “시행령 제2조제8항을”을 “시행령 제2조제9항을”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사용을 위한 경우”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농경지를 농업인”을 “농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 산정은 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아목 중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를 “시행령 제2조

제9항제1호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등을 75퍼센트” 를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를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등을 50퍼센트” 를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에” 를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퍼센트로 한다.” 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80퍼센트로 한다.” 를 “100분의 80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30퍼센트로 한다.” 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을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을” 을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를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2호 중 “폐제방으로서” 를 “폐제방·폐하천으로서” 로 한다.

제50조 중 “군수, 부군수,” 를 “부군수,” 로 하고, “소유하는” 을 “소유 또는 임차하는” 으로 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1급에서부터 2급까지의 관사” 를 “2급 관사” 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 관사를 군수가” 를 “2급 관사를 부군수가” 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보일러,에어콘” 을 “보일러, 에어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를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세트, 카텐” 을 “응접세트, 커튼” 으로 하고, “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를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를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 를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제3항 및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 10조의3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영 제10조의3----- ----- ----- -----

야 한다.

⑥ ~ ⑭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2. (생략)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에 -----

4. ~ 6. (현행과 같음)

7. -----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8.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득·처분의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기존 제8호에서 이동

② (생략)

1. ~ 2. (생략)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
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
지

5.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 ③ (생략)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
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 6. (생략)

④ (생략)

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
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
외한다.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
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의 ----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재개발사
업구역내의 ----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② (생략)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
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
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
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
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
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신 설>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의2에 따른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허가대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허가 -----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6. 사용허가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익로 사용허가 할 수 있

	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 내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군 내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사용허가부-----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

① -----

----- 사용허가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규정)

① -----

사용-----
----- -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

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 --

-----시 행 령

제2조제9항을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 행정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1. 농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 9.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2. ~ 9.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삭 제>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삭 제>

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 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가. ~ 사. (생략)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⑤ -----
----- 제3항에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허가 -----

1.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 -----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
 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
 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
 대하는 경우
 아. (생략)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
 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사. (생략)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
 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제8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
 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자. (현행과 같음)
 2. -----
 ----- 대부료 등을 100
분의 75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시행령 제
2조제9항제2호 -----

 아. (현행과 같음)
 3. -----
 ----- 대부료 등을 100
분의 50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시행령 제2
조제9항제4호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

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⑥ (생략)

1. ~ 2. (생략)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⑦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

----- 사용허가-----
----- 100분
의 30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용 -----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사용허가,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사용허가-----

-----사용-----

② -----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불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6회 분납

③ ~ ④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략)

1. ~ 2. (생략)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1.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u>폐제방으로서</u>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와 서로 맞닿은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3. ~ 10. (생략)	2. ----- ----- <u>폐제방·폐하천으로서</u> - ----- ----- -----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u>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소장 등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u> 공용주택을 말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제51조(관사의 구분) (생략)	제50조(정의) ----- -- <u>부군수</u> , ----- ----- ----- <u>소유 또는</u> <u>임차하는</u> -----
1.1급 관사 : <u>군 수 관사</u>	제51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2. (생략)	<삭 제>
3.3급 관사 : <u>1급에서부터 2급까지의 관사</u> 이외의 관사	2.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 및 사용허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u>1급 관사를 군수가</u> 직접 사용할 경	3.3급 관사 : <u>2급 관사</u> ----- --
	제52조(사용 및 사용허가) ----- ----- ----- ----- -- <u>2급 관사를 부군수가</u>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단,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 ① ~ ② (생략)

<신 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
-----보일러, 에어컨 -----

2. (현행과 같음)
3. -----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6. ----- (단, 2급 관사에 한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u> 2. <u>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u> 3. <u>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u> 4. <u>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u> ② (생략)	<u>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9. (생략)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3. (생략)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③ ~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

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 ③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⑥.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 23. (생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서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 ⑨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33. (생략)

② (생략)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제16조(수익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 7. (생략)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 ⑧ (생략)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⑩ ~ ⑫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1 (생략)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기존 확정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의 명시 (안 제2조제4호)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 지원 명시 (안 제4조제1항)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지원절차 규정 (안 제5조제4항)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관리·운용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안 제7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기존 확성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행정정보와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의 명시(신설)
- 안 제4조제1항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 지원 명시
- 안 제5조제4항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지원절차 규정(신설)
- 안 제7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주체 명시(신설)

○ 검토결과

- 최근 노년층의 증가, 마을방송의 난청과 노후화 등으로 기존 확성기 방식인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관리·운영자”를 “관리·운용자”로 하고, “관리·운영하는”을 “관리·운용하는”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를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향의”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을 “(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운영자” 를 각각 “관리·운용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운영하여야” 를 “관리·운용하여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비용의 부담)” 을 “(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운영비용은” 을 “관리·운용 비용은” 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 <u>관리·운영자</u> ”란 마을방송시스템을 <u>관리·운영</u>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신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 <u>관리·운용자</u> ” ----- --- <u>관리·운용</u> -----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u>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u> 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u>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u>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1. ~ 4. (생략)	제4조(지원기준 등) ① ----- ----- ----- ----- ----- ----- -----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u>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u> ----- -----. ② <u>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u>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6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단서 신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① -----

-- 관리·운용자-----

② ----- 관리·운용자

----- 관리·

운용자-----

----- 관리·운용자-----

③ -----관리·운

용자-----

-----관리·

운용-----

제7조(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관리·운용 비용

-----,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재난안전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기존 확성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재난상황과 각종 행정정보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4조제1항,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스마트마을방송 장비 임차료 : 사무관리비 연 60,000천원
- 통신 요금 : 공공운영비 연 27,000천원

나. 추계 결과 : 435,000천원 정도 / 5차년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구축·운영비용은 5차 년도까지 총 435,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435,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통신팀장 오종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지 방 세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재원 조달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지방세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우리 군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음
- 물가 및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제7조제1항 중 별표1)

구 분	수 수 료		비 고
	현 재	인 상	
기본요금 (0.75m ³ 까지)	13,530원	15,280원	市 처리시설 유입 처리 수수료 포함(10ℓ당 10원)
초과요금 (매0.1m ³ 마다)	1,490원	1,680원	

5. 관계법령

- 「하수도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고 있음
- 물가 및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변경(인상)함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

- ▷ 기본요금(0.75m^3 까지) : 13,530원(당초) ⇨ 15,280원(변경)
- ▷ 초과요금(매 0.1m^3 마다) : 1,490원(당초) ⇨ 1,680원(변경)

※ 市 처리시설 유입 처리 수수료 포함 (10ℓ당 10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처리 업무 물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분뇨처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기본요금 (0.75m ³ 까지)	14,530원	750원	15,280원
초과요금 (매0.1m ³ 마다)	1,580원	100원	1,680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

※분뇨처리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것을 말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수집 · 운반	처리	계	
2019년 6월부터	기본요금 (0.75㎥까지)	12,700원	750원	13,450원	부과기준
	초과요금 (매0.1㎥마다)	1,270원	100원	1,370원	
2020년 6월부터	기본요금 (0.75㎥까지)	12,780원	750원	13,530원	기본요금 (0.75㎥까지)
	초과요금 (매0.1㎥마다)	1,390원	100원	1,490원	초과요금 (매0.1㎥마다)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는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		※ 분뇨처리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 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말함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에게 보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돕기 위하여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방향과 역할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대여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말에도 개방함으로써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규정한 【별표】를 조정코자 함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이 보다 편이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또한,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대여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휴무일 조정으로 주말에도 개방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장 제21조~제26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
- 【별표1】 별표를 별표1로 하여 휴무일·이용시간 및 이용료, 대여 및 연장기간(종전의 제26조제2항, 제27조 관련) 등을 변경
- 【별표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신설)
-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 반환(신설)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간 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자료]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내용

- 조사일시 : 2022. 8. 8. ~ 8. 19. / 2주간
- 조사대상 : 512명(장난감도서관 이용자)
- 조사내용
 - 주말 개관 여부에 대한 의견 설문 (현행 : 평일 개관, 주말 휴관)
 - 이용료 유료·무료에 대한 의견 설문 (현행 : 1점 이용료 500원)
 - 기타 건의사항 등
- 조사결과

설문조사 내용	현행 유지	제도 개편	무응답	합계
도서관 개관 요일	51명(10%)	455명(89%)	6명(1%)	512명(100%)
이용요금	76명(15%)	403명(79%)	33명(6%)	512명(100%)
※ 기타 건의사항 의견				
1. 장난감 분실 및 훼손시에 이용자 보상책임을 면제 요청				
2. 장난감 대여가능 개수 상향 요청(현행 : 회원 1인당 2점 대여)				

■ 부서 검토결과

- 도서관 개관 요일 및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 다수 의견 수렴
 - 장난감도서관 근무자와 사전 협의 완료
- 무분별한 장난감 이용을 자제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 보상책임을 존치
- 장난감 대여가능 개수 상향(회원의 자녀 1명당 2점 대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을 제5장(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으로 하고, 제31조제2항(종전의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종전의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종전의 제27조) 중 “별표”를 각각 “별표1”로 하며, 제5장(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을 제6장(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으로 하고, 제6장(제36조부터 제37조까지)을 제7장(제42조부터 제43조까지)으로 하며, 제4장(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지원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2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50 %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13. 세자녀 이상 가정 : 50%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항, 제33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 회 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 무 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 용 시 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 용 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 여 수 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 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 난 감 및 도 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 난 감 관 리 봉 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 난 감 이 름 표	500원	

[별 표 2]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교육실 대관료	시간당 최대 20,000원	○ 보육과 무관한 목적의 대관은 불가 ○ 1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1시간 사용으로 봄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구분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 1일 최대 30,000원 참여 재료비 : 1일 최대 20,000원(수강료와 별도)	

[별 표 3]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 반환(제26조제1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금액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
--	---

	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2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	---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5. 「5·1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	--

	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50%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13. 세자녀 이상 가정 : 50%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이내
제4장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 제24조 (생략) 제25조(회원의 의무) ①(생략) 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제5장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 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회원의 의무)① (현행과 같음) ②----- ----- ----- -----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1과 -----.																																	
제26조(연회비) ① (생략)	제32조(연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1과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장난 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물 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연장기간 은 【별표】와 같다.	제3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 별표1과 -----.																																	
제28조 ~ 제33조 (생략)	제34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34조 ~ 제35조 (생략)	제40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6조 ~ 제37조 (생략)	제42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																																	
[별 표]	[별 표 1]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26조제2 항, 제27조 관련)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 항, 제33조 관련)																																	
<table><tr><td>구분</td><td>내용</td><td>비고</td></tr><tr><td rowspan="2">연회비</td><td>일반회원 10,000원</td><td rowspan="2">회 원 등 록 일 부터 1년간</td></tr><tr><td>시설회원 20,000원</td></tr><tr><td>이용시간</td><td>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0:00부 터 17:30까지</td><td>입·퇴관시간</td></tr><tr><td>이용료</td><td>장난감 1점당 500원 도서 1권당 300원</td><td>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td></tr><tr><td>대여수량</td><td>일반회원 장난감 최대2</td><td>1회 기준</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 원 등 록 일 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이용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0:00부 터 17:30까지	입·퇴관시간	이용료	장난감 1점당 500원 도서 1권당 300원	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장난감 최대2	1회 기준	<table><tr><td>구분</td><td>내용</td><td>비고</td></tr><tr><td>-----</td><td>-----</td><td>-----</td></tr><tr><td>휴무일</td><td>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td><td rowspan="2">입·퇴관시간</td></tr><tr><td>이용시간</td><td>10:00 ~ 19:00</td></tr><tr><td>이용료</td><td>무료</td><td>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td></tr><tr><td>대여수량</td><td>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td><td>1회 기준</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	-----	-----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입·퇴관시간	이용시간	10:00 ~ 19:00	이용료	무료	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1회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 원 등 록 일 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이용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0:00부 터 17:30까지	입·퇴관시간																																
이용료	장난감 1점당 500원 도서 1권당 300원	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장난감 최대2	1회 기준																																
구분	내용	비고																																
-----	-----	-----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입·퇴관시간																																
이용시간	10:00 ~ 19:00																																	
이용료	무료	장 난 감 도 서 관 내 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1회 기준																																

	점, 도서 최대2권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3점, 도서 최대3권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	
○물품등의 배상기준(제25조제2항 관련)(생략)					
<신 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제26조제1항 관련)					
[별 표 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교육실 대관료	시간당 최대 20,000원			○보육과 무관한 목적의 대관은 불가 ○1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1시간 사용으로 봄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구분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 1일 최대 30,000원 참여 재료비 : 1일 최대 20,000원(수강료와 별도)				
[별 표 3]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 반환(제26조제1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금액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50%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의거 정비 함 (안 제8조)
- 위원회의 임시회를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함 (안 제11조)
- 위원의 해촉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거 정비 함 (안 제12조)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내지 제4조의 6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8조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함
- 안 제11조 위원회의 임시회를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함
-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위법(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의거 정비함

○ 검토의견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전단 중 “10명” 을 “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u>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u>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10명-----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u>사회복지기관의 장</u> 2. <u>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u> 3. <u>관련 업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5급 이상 공무원</u> 4. <u>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15명-----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가. <u>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u> 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u>장</u>으로 구성된 단체 다.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u> 3.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4.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④ -----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u>위원장이</u> 소집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u>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2. <u>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 3. <u>위원 본인이 해촉이나 임명 취소를 원하는 경우</u>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u>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6호, 2022. 6. 14. 일제개정)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원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시행일 2022. 6.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식(안 제5조, 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자격 및 선정(안 제7조, 제8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및 해지(안 제9조, 제10조)
- 지도점검 및 운영비 보조(안 제16조, 제17조)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5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식
- 안 제7조,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자격 및 선정
- 안 제9조, 제10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및 해지
- 안 제16조, 제17조 지도점검 및 운영지원 규정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 필요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아동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돌봄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운영방식) ① 센터는 군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각종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 자격)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군수 또는 다른 기관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받고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위탁 협약의 해제·해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벌린 명의를 사용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센터의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제9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사무위탁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시설의 원상회복,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부대시설과 장비비품은 군수와의 협의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센터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센터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4조(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돌봄 아동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
4. 급·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 게시하고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이용료 외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변경된 계획에 집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반기별로 돌봄 아동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급식지원 대상 규정 변경(안 제2조 제1호 및 제6호, 제8호)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호 및 제6호, 제8호 급식 지원대상을 변경 규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급식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 -----.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 -----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8. 삭제
9. (생략)	8. (현행과 같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규정(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안 제7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규정(안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규정(안 제9조)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규정(안 제10조)

5.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군내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6조~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 안 제8조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규정
- 안 제9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규정
- 안 제10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을 규정 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한 달성군 조례 제정 이후 각종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지만,
- 고용노동부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매칭 지원 등 사업의 추진방향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각 분야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주체 또는 유관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안 제3조)
-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신설 (안 제3조의 2)
-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안 제3조의 3)

5.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주체 또는 유관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안 제3조의 2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신설
- 안 제3조의 3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규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4.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3호(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신설>	삭제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 4.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

<신설>

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신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	---

제3조 ~ 제14조(생략)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5조(현행과 같음)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을 위반이므로 일부를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권한 및 재산을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를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규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일부를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2항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에서 ⇨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u>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u>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u>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u>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심폐소생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만을 담고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5.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제13조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검토의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센터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시설”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갖추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8.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의 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재정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경 10km 이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의료기관

2. 법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인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응급장비 설치 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단체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5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이하 “수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 및 그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제5조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사항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 대상의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는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3.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내용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계 및 실적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대상의 장(이하 본 조에서 “대상의 장”이라 한다)이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정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등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 지원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

-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운영지원 :

1,200백만원 × 1개소 = 1,200백만원

※ 2023년도 1회분 반영예정

나. 추계 결과 : 1,200백만원 정도(연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운영지원 비용은 연간 1,200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1,200백만원 정도(연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지 방 세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운영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재원 조달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 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지방세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6. 작성자: 보건소 보건과 의약관리팀장 한승호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관련 군세 감면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2. 10. 29.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역(‘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한함)

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1·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 감면 추계액 : 71만 원

(단위: 만 원)

구 분	합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비고
				개인분	개인사업자	
합계	71	20	50	1	0	
2023년	55	20	34	1	0	
2022년	16	0	16	0	0	

5.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II. 검토의견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기본세율 주민세를 면제하고, 향후 추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이태원사고 관련 달성군 사망자는 1명으로 군세를 감면하여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련 공문

※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442(2022. 11. 1.)]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입 지원 방안

◆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법률상 지원 방안 안내

□ 지원 방안

①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대상 지자체) 희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 그 가족의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② 지방세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채납처분 유예) 채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④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세외수입 성격별로 채납자의 채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채납체분 유예), 과태료그 외 부과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용 권고

※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14067(2022. 11. 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쏘지 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①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② 지방세 감면 추진

① 지원 방식

- **쏘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별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②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③ 감면 내용

- ' 22. 12. 자동차세 ~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2020.1.15., 2021.6.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

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련 복지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어르신들의 복지 문화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
-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 시설현황

위치	시설규모	예상직원	예상이용 인원(1일)	비고
현풍읍 테크중앙대로 231	3203.77m ² (교육문화복지센터 2층)	13명 (관장,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500명 정도	2023. 3. 준공예정

○ 수탁운영자 모집·선정 및 위탁기간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 서류 및 사업제안설명 심사 후 선정위원회 의결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2
- 위탁기간 : 5년(2023. 3. 1. ~ 2028. 2. 29.)

○ 위탁운영 예산

- 관련예산 : 960백만원(시 266, 군 694)

Ⅱ. 검토의견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2023년 3월 준공예정인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 모집후 심의위원회 심사후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5.12.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 10. 30.)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2020년 군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총 191개소
- 2023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15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251개소
- 2022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없으며, 2020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집행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191개소

(2022.12.31.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 시설						집행율 (%)
						미집행 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3,015	15,697,852	2,764	14,924,144	251	773,708	16	107,220	235	666,488	91.7
도 로	소계	2,298	5,681,520	2,110	5,425,400	188	256,120	12	56,590	176	199,530	91.8
	중로	319	2,367,739	315	2,338,004	4	29,735	2	20,581	2	9,154	98.7
	소로	1,979	3,313,781	1,795	3,087,396	184	226,385	10	36,009	174	190,376	90.7
주차장	노외주차장	98	174,852	69	158,812	29	16,040	-	-	29	16,040	70.4
궤 도	궤도	1	46,636	-	-	1	46,636	1	46,636	-	-	-
광 장	경관광장	1	19,640	1	19,640	-	-	-	-	-	-	100.0
공 원	소계	92	219,448	73	155,818	19	63,630	-	-	19	63,630	79.3
	어린이공원	67	146,279	62	138,329	5	7,950	-	-	5	7,950	92.5
	소공원	22	16,961	10	8,101	12	8,860	-	-	12	8,860	45.5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	-	2	46,820	33.3
녹 지	소계	187	1,800,173	175	1,741,930	12	58,243	2	2,680	10	55,563	93.6
	완충녹지	131	1,570,110	119	1,511,867	12	58,243	2	2,680	10	55,563	90.8
	경관녹지	46	139,283	46	139,283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1,096	87	229,782	1	1,314	1	1,314	-	-	98.9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743	4	1,109,018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245	6,083,744	245	6,083,744	-	-	-	-	-	-	1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2.12.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235	666,488	
	도 로	합 계	176	199,530	
		중 로	2	9,154	
		소 로	174	190,376	
	주차장	노외주차장	29	16,040	
	공 원	합 계	19	63,630	
		어린이공원	5	7,950	
		소공원	12	8,860	
		문화공원	2	46,820	
	녹 지	완충녹지	10	55,563	
	연구시설	연구시설	1	331,725	

□ 2023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51개소(군비 250, 국·시비 1)

(단위 : 천㎡, 억 원)

구 분	시설 구분	합 계			2023년 ~ 2025년 (1단계)			2026년 ~ 2028년 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51	774	1,359	140	164	551	110	278	808
군 비	소 계	250	442	1,359	140	164	551	110	278	808
	도 로	188	256	755	118	142	425	70	114	330
	주 차 장	29	16	68	1	1	17	28	15	51
	궤 도	1	47	310	-	-	-	1	47	310
	공 원	19	64	113	17	17	63	2	47	50
	녹 지	12	58	87	3	3	20	9	55	67
	공공공지	1	1	26	1	1	26	-	-	-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	-	-	-	-	-	-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5.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Ⅱ. 검토의견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달성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3,015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251개소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188개소, 주차장 29개소, 궤도 1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2개소, 공공공지 1개소, 연구시설 1개소입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도로 118개소 등 140개소에 대하여 집행 계획이고, 2026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도로 70개소 등 110개소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